

예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검토 보고 -

□ 제안이유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허가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음에 따라 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 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로 확대
(안 제2조제2항)

□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9조
- 충청남도 세정 13400-821(2003. 5. 12)군세감면조례증개정표준안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도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의 해당자에게 동일하게 감면을 확대해 줌으로서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므로 인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 대상자 모두에게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편의 제공과 사전홍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서 세제효과가 있을 것이며,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검토 보고 -

□ 제안이유

- 의종은 형제상 정비 및 다목적 광장조성과 추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의종은 형제상 정비(교환) 및 민자유치로 골프리조트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재산취득 : · 계 : 18건(11,533 m^2 , 621,802천원)
 - 토 지 : · 의종은형제상정비(기부채납) 3건(1,088 m^2 24,690천원)
 - 의종은형제상정비(교환) 1건(1,243 m^2 56,400천원)
 - 다목적광장조성 1건(2,310 m^2 42,000천원)
 - 추사기념관건립 13건(6,892 m^2 498,712천원)
- 재산처분 : · 계 : 6건(1,804,063 m^2 2,291,380천원)
 - 토 지 : · 의종은형제상정비(교환) 3건(1,088 m^2 24,690천원)
 - 민자유치로골프리조트조성 3건(1,802,975 m^2 2,266,690천원)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공유재산의관리계획)

□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목적광장 조성 등 4건의 토지취득과 민자유치로 하는 골프리조트조성 등 2건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서
- 의좋은 형제상 정비를 위하여 대흥면 번영회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한 토지를 국유지(경찰청)와 교환하여 증으로서 연차적인 역사테마공원조성과 현재 협소한 주차장 확장으로 대형 버스등의 주차공간 확보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 예산~광시간 지방도 619호선 도로에서 의좋은 형제상으로 진입되는 도로가 비좁고 대형버스등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 확장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경찰청)의 면적 및 가격의 차이로 인한 행정 절차상 처리과정에 있어 현재로서는 구두언약으로서 앞으로 문제발생시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토지는 본사업을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이 2회추경에 계상되어 있으며 토지구와의 매입과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다목적 생활공간조성 사업으로 마을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재건의 기여와 주변에 있는 농업기술원 및 앞으로 조성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등과 연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매입은 연 1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 관광지로서 군재정 형편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무리한 보상매입지역 보다는 현실적인 점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대형산불로 전소된 광시면 대리소재 군임야에 민자유치로 조성하고자 하는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군재정 수입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대단위 사업이니 만큼 매각하는데 있어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끝으로 장래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재원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1 호
----------	--------

제출연월일

2003. 6. 23

1. 제안이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종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허가 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음에 따라 예산군세감면조례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항)
- 나. “국가유공자” 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로 확대(안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지방세법 제9조
- 나. 충청남도 세정13400-821(2003.5.12) 군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안 통보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사용하는”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4. (생략)</p> <p>③(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 ----- 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p> <p>1.~4.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